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박 지 현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8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1일

3. 제안이유

위원회 당연직 대상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기관 명칭 및 위원 명칭 변경(안 제3조)

- “충북지방경찰청” → “충청북도경찰청”
- “기무부대장” → “337군사안보지원부대장”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개정안은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직제 변경사항 및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,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개정안은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기존 “충북지방경찰청장”의 명칭이 「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의 개정으로 인하여 “충

충북도경찰청장”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, 기존 “기무부대장”의 명칭이 「국군기무사령부령」이 폐지되고 「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」이 새롭게 제정되어 “337군사안보지원부대장”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제3조제3항제5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반영함.

5. 충청북도경찰청장

11. 337군사안보지원부대장

- 제3조제4항제5호 중 “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”을 “충청북도경찰청 경비과장”으로 수정 반영함.

- 제3조제5항 중 “충북지방경찰청장”을 “충청북도경찰청장”으로 반영함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본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호에 해당하여 조례안 예고 생략.

○ 관련 부서: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**“특이사항 없음”**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 당연직 대상기관의 직제 개정 및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,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